

山林에 關한 모든 일은 林業專門部署에 맡겨야 한다

金思日 / 林業研究院 山林環境部長

◎序言

지난날 山이 헐벗고 荒廢化 되었을 때는 山에 主인이 너무 없어서 탈이드니 이제 山이 울창하게 되니 반대로 山에 주인이 너무 많아 탈이다.

“주인이 여럿인 손님이 밥 끓기가 일수고”,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 간다”는 우리 俗談의 참 뜻을 한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슨 일이고主管하는 사람이나主管部署가 많으면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서로 일을 미루게 되고 또 意見이 紛紛하여 일에 混亂만 가져올 뿐 일이 잘 않 된다는 眞理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序頭에서부터 왜 이러한 말을 하는가하면 그 좋은例가 우리나라 山林의 現主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山地의 利用 開發에 關聯한 中央行政部署의 多岐化가 問題다.

過去 國民生活水準이 落後된 때에는 山林에 對한 國民의 要求는 단지 山林의 經濟機能인 林產物의 生產供給뿐이었으나 오늘 날과 같이 高度產業社會化됨에 따라 山林의 經濟機能보다 國民保健 및 休養, 水源涵

養, 自然環境保全 等 山林의 公益機能에 對한 要求가 점점 增加하여 山林에 對한 國民의 關心도 높아지고 各部處는 앞다투어 山地利用開發에 热을 올리고 있으나 200萬山主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對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 山林의 公益機能도 重要하지만 山主立場에서는 山林의 經濟機能이 더 重要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疏忽이 取扱 되어서는 아니되며 서로 排他的인 山林의 두 가지 機能을 調和있게 達成하기 위해서는 高度의 山林經營技術이 要求되며 이려한 山林經營技術을 바탕으로 制定된 山林法이 山林을 다스리는 最高의 基本法이 되어야 함에도 各部處가 山地 利用에 關聯된 法規를 制定할 때마다 山林法을 擬制 또는 排除하는 等 山林法보다 上位의 法規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山林法은 有名無實한 힘없는 法이 되어 一貫된 山林施策을 實現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山地는 저마다의 開發로 열룩덜룩한 누더기 같이 되어 버린 것은 누구도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며 至今 이時間에도 到處에서 山林은 繼續破壞되고 있다.

◎自然環境保全은 自然環境保全法 制定만이 能事가 아니다!

법 제정만이 능사가 아니고 국민의 의식구조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建設部가 制定한 自然公園法의 基本趣旨가 山林의 無秩序한 開發을 防止하고 自然環境을 잘 保全하고자 하는데 있었다면 지금 잘 保全되고 있는지 反問하고 싶다.

自然公園法에 依하여 指定된 國立公園內에 골프場, 스키場, 駐車場 其他 慰樂施設等으로 山林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져 自然環境이 無慘하게 破壞되고 있다는 事實은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自然環境을 保護管理하여야 할 主體가 오히려 自然環境을 더 많이 破壞하고 있으니 차라리 自然公園法을 制定하지 않았더라도 自然環境은 더 잘 保全되었을 것이다.

山林廳에서 폄고 있는 山林政策이 自然環境保全에逆行하고 있음인지 最近에 環境處에서는 自然環境保全法을 制定하겠다고 立法豫告와 同時に 公聽會까지 開催하였다. 提示된 本法制定의 背景과 必要性에서,

○自然環境 毀損과 自然生態系 破壞에 效率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體系的 保護 裝置

○各部處에 分散되어 있는 自然環境保全 關聯機能의 總括 및 綜合調整

○保全과 開發의 均衡과 效率的 國土利用管理를 圖謀할 수 있는 國家政策方向定

立等을 力說하고 있으나 이러한 必要性에 對하여 問題를 提起하지 않을 수 없다.

○自然環境毀損 및 自然生態系破壞의 效率的인 對處를 為해서라면 現行 環境保全法에 依하여 大氣汚染物質의 放出과 產業廢棄物의 放置 等을 막아 준다면 山林內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自然環境破壞는 現行山林法으로도 充分히 對處가 可能하고 萬若 未洽한 部分이 있다면 山林法을 補強하면 된다고 보며,

○各部處에 分散되어 있는 自然環境保全 關聯機能의 總括 및 調盤이라면 自然環境保全法을 制定하는 것보다 모든 關聯機能을 山林廳으로 移管하여 重複된 業務의 摩擦로 因한 各部處의 不便한 關係를 海消하고 一貫性 있는 自然環境保全 政策을 實現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賢明한 方法이라고 생각하고,

○自然環境保全과 開發의 均衡과 調和로 效率的인 國土利用管理를 圖謀하기 為해서라면 國土利用管理法 만으로도 足하다고 생각하며 全國土 面積의 65%를 山林이 차지하고 있는 以上 自然環境保全의 主對象은 山林일 수 밖에 없고 山林을 다루는 專門機關인 山林廳이 存在하는 이상 山林은 山林廳에 맡겨 두는 것이 愛當할 것이다.

◎ 山林行政內部에 問題點은 없는가

自然環境保全을 為하여 山林內炊事者 및 汚物放置者를 處罰할 수 있도록 山林法을 改定하는 한편 林業研究院의 組織을 改編하여 山林環境部, 山林生態系, 立地環境科, 山林保全科등을 新設, 自然環境保全 研究에 拍車를 加하고 있으나 아직도 解決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山林法이 林業全體를 包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產業으로서 林業全體를 受容 할 수 있는 林業基本法의 制定이 時急함.

○傾斜度와 林木度에 依한 保存林地와 準保存林地의 區分은 林地保存의 實效性이 微弱하기 때문에 自然環境因子와 社會與件等을 綜合的으로 檢討分析하여 生產林地, 自然環境保存林地 水源涵養保存林地 稀貴動植物保全林地, 保健休養林, 學術研究林等 山林의 多目的經營을 期할 수 있도록 全國林地의 機能分類가 時急함.

○山林環境 保全과 復元等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Service)를 提供하기 為해서는 山林廳 機構를 改編하여 山林環境局, 野生動物課, 自然環境課, 造景課等의 新設이 不不避함.

○골프場, 스키場, 採石場等 山林의 大面積 毀損이 褒慮되는 認許可는 地方自治團體長에게 委任할 것이 아니라 自然環境保全, 山林毀損의 最小化, 愛當性分析, 統制機能의 強化等을 為하여 山林廳에서 直接 管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 結論

以上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各部處間에 業務의 重複과 軋轢을 解消하는 한편 國家豫算과 組織의 浪費를 막고 國民과 山主에게 보다 良質의 奉仕를 提供하기 為해서는 山林에 關係되는 모든 業務는 山林廳으로 移管하여 綜合的이고 效率的인 山林施策이 實現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원통신란

○협회비 미납회원께서는 다음 계좌번호에 입금하여 협회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농협중앙회 : 031-01-231375

한국독립기협회

○국민은행 : 827-01-0037-647

권오진